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

원 고 김 기 창(金基昌)  
(우)110-800, 서울 종로구 계동 \*\*-\*  
이메일: [keechang@fastmail.fm](mailto:keechang@fastmail.fm)  
전화: 010 8330 \*\*\*\*

피 고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우)135-758,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 변호사 정진영 등)

사건 번호 **2007가단403715** (이송전 사건: 2007가합91904)

재 판 부 민사43단독

2007.11.15. 자 귀원의 준비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를 보정하고, 청구 원인을 정리합니다. 원고는, 보정된 청구 취지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액을 초과하는 인지액을 이미 귀원에 납입하였습니다.

## 청구취지 보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14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가입자 설비를 제공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위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날 또는 원고와의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하루 5000원씩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보정

### 가. 계약 위반

1.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 계약은 피고의 등록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센터”라는 웹페이지에서<sup>1</sup> 전자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국민은행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그 첫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증 제13호>

The screenshot shows the KB public key authentication center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for 'MY Info', '고객센터', 'Sitemap', '이벤트존', and '상품관'. Below this is the KB logo and a search bar.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공인인증센터' and includes a navigation menu on the left with options like '인증서발급/재발급', '타행/타기관 인증서등록', and '인증서관리'. The central part of the page displays a 7-step process for '개인용 인증서발급' (Individual Public Key Authentication Certificate Issuance):

- 01 약관동의 (Agreement Consent)
- 02 사용자 본인확인 (User Self-Verification)
- 03 발급대상 유료인증서 선택 (Select Issuance Target Paid Certificate)
- 04 보안카드, OTP/수수료 계좌번호 입력 (Enter Security Card, OTP/Transaction Fee Account Number)
- 05 수수료 출금예약 내역확인 (Check Transaction Fee Withdrawal Reservation Record)
- 06 고객 세부정보 입력 (Enter Customer Detailed Information)
- 07 인증서암호 및 저장위치 선정 (Select Certificate Password and Storage Location)

The '01 약관동의' step is expanded to show three agreement sections: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Basic Terms):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Terms of Use):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TV뱅킹, 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인인증(YesSign)서비스이용약관** (Public Key Authentication (YesSign) Service Terms of Use):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약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At the bottom of the agreement section, there are two buttons: '예' (Yes) and '아니오' (No).

1 <http://ibn.kbstar.com/quics?page=A002715>

2. 원고는 피고가 마련하여 제시한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가입자이므로, 당사자 간에는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3. 피고의 이용 약관<sup>2</sup> 제4조 제1항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 관계법령 및 Yesign 인증업무준칙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 관계 법령”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전자서명법의 위임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25호),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22호),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2-48호),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 표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6호) 등을 말합니다.<sup>3</sup> 또한 피고의 인증업무준칙은 전자서명 관계법령상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습니다.<sup>4</sup>
4. 따라서 피고는 전자서명 관계법령상 의무를 자신이 스스로 마련한 공인인증 서비스 이용약관(“약관”)과 공인인증 업무준칙(“준칙”)을 통하여 자신의 계약상 채무로 인수하였다 하겠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i) 피고는 약관 제5조에 정한 서비스를 MS IE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인증서 재발급, 갱신 발급, 인증서 암호변경, 인증서 폐지, 인증서 실시간 유효성 확인, 전자문서 시점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는 원래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에 구애받음 없이 이를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MS IE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피고의 행위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어긋남은 물론,<sup>5</sup> 전자서명법 제7조에도 위반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준칙 3.3.2.1은 공인인증서의 갱신발급 신청을 하려는 “가입자는 결제원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접속하여 가입자 소프트웨어로 전자서명정보를 생성하고 공인인증서 갱신신청내역을 전송”하도록 규정하며(밑줄은 원고가 추가), 이 절차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에도 준용됩니다(준칙 3.4.2). 이 “가입자 소프트웨어”는 피고 또는 그 등록대행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 또는 그 등록대행기관은 MS IE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http://www.yesign.or.kr/consumer/agreement.php>

3 [http://www.rootca.or.kr/kisa/kcac/jsp/kcac\\_9040.jsp](http://www.rootca.or.kr/kisa/kcac/jsp/kcac_9040.jsp) 참조.

4 <http://www.yesign.or.kr/consumer/cps.php>

5 청구취지 변경 신청 및 준비 서면, 제78항 참조.

ii) 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시설 및 장비 규정”) 9.2.4.는 “전자서명키와 공인인증서 전달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기술규격6.1은 “사용자가 전자서명생성키 및 공인인증서를 PKI기반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PKCS12]를 준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6</sup> 피고 또는 그 등록대행기관은 MS IE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만 이 기능을 제공하며<sup>7</sup>, 그 경우에조차도 PKCS12를 정확히 준수하지 않아 가져오기가 실행되지 않습니다.<sup>8</sup>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서명생성키 및 공인인증서를 PKI기반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MS IE 외의 웹 브라우저, 이메일 프로그램 등)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i) 전자서명법 제2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sup>9</sup>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인증서 발급자의 명칭 등, 발급 당시의 인증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에게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공인인증서의 용도, 사용목적, 인증기관의 책임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쉬운 수단 또한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수단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 a. 극소수의 이용자만이 임의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마련하여 전자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용자는 현재 MS IE 에서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들 이용자와의 전자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b. 이들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최상위 인증기관의 심사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안전성이 의문시 됩니다.<sup>10</sup>
- c. 피고가 전자서명법 제22조의2에 기하여 이용자에게 “쉬운 수단” 제공하는 것도, 같은 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인증역무”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피고는 가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인증역무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온라인 banking, 쇼핑 등 전자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6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규격(기술규격6.1), “8. 부가 기능”

7 청구취지 변경 신청 및 준비 서면, 제72항, 제73항 참조.

8 청구취지 변경 신청 및 준비 서면, 제71항 참조.

9 전자서명법 상 “이용자”의 의미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 및 준비 서면, 제40항, 제41항 참조.

10 청구취지 변경 신청 및 준비 서면, 제53항-제55항 참조.

- iv)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4조 제1항은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회원사들(시중 은행)이 임의로 만들어 고객에게 배포하는 가입자 설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 설비는 MS IE 에서만 작동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나. 공정거래법 위반

### 시장지배적 사업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6. 공정거래법 제4조 제1호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6호), 제III항에 의하면, “당해 사업자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인지 여부는 市場占有率, 進入障壁의 存在與否 및 程度, 競爭事業者의 相對的 規模, 競爭事業者間의 共同行爲의 可能性,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 存在, 市場封鎖力, 資金力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判斷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차례로 검토하면,
- i) 피고가 2006.8.10. 스스로 마련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증 제14호)에 의하면, 2006.7.31. 기준 전체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 1,352만 건 중, 피고가 발행한 공인인증서 건수(2006.8.10 기준)가 100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73.9%).
- ii) 공인인증 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일정한 자본 규모 이상을 갖춘 자로서 전자서명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하여 인가권자의 심사를 받고, 인가권자(정보통신부 장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한하여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iii) 경쟁 사업자의 규모는 피고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상황입니다. 2005.5.25.

정보통신부의 발표에 의하면, 그 당시 발급된 1,015만 건의 공인인증서 중, 피고 금융결제원이 731만5139건(72%)으로 가장 많고, 코스콤 139만4335건(13.7%), 한국전산원 82만2949건(8%), 한국정보인증 46만5674건(4.5%), 한국전자인증 6만 3283건(0.6%), 한국무역정보통신 2만7804건(0.2%)등의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증 제15호).<sup>11</sup>

- iv) 피고는 또한 공인인증서의 가격책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 경부터 피고 외의 공인인증기관은 물론, 감독관청인 정보통신부역시 공인인증 사업자 간의 정당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적정한 가격으로 유료화하고자 하였으나(증 제16호),<sup>12</sup> 금융결제원은 기존의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경쟁 공인인증 사업자를 枯死(squeeze out) 시키기 위하여 무료를 고집하였고, 2006.7.1. 부터 범용 공인인증서는 연간 4,4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피고는 은행/카드/보험/민원신청 용으로 용도를 “제한”한 공인인증서(사실상 제한이라고 하기도 어렵지만)를 여전히 무료로 발급하는 정책을 관철하여 경쟁을 사실상 말살하고 있습니다(증 제17호).<sup>13</sup> 피고의 자금력은 경쟁사업자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며, 피고는 공인인증 사업 외에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결제대행 등 e-pay 업무, 기타 부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증 제18호; 피고의 2007년 사업 안내서 제27면).
- v) 범용 공인인증서와 은행/카드/보험/민원신청 용 공인인증서는 그 기능이나 효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는 은행/카드/보험/민원신청 용도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며, 법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서 이용이 강제되는 거래 유형도 바로 이러한 금융거래 및 전자민원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피고는 범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업무도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4. 11. 6 ~ 2006. 6. 30 기간 동안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스스로의 사업전략에 따르더라도 범용 공인인증서와 은행/카드/보험/민원신청 용 공인인증서 간에 분간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증 제19호). 따라서 범용이건, 은행/카드/보험/민원신청 용이건 이를 구분함이 없이, 그리고 개인용/법인용 공인인증서를 구분함이 없이 이를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 상품 및 용역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http://www.kisia.or.kr/korean/news.php?skin=kisia&scene=read&position=277&sn=5530&page=28> (2005.5.26. 디지털 타임즈 보도)

12 <http://www.jaeik.co.kr/news/gongji.php3?num=1599> (전자신문 2003.1.23. 보도)

13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69257&g\\_menu=022600](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69257&g_menu=022600) (2005.9.11. inews24 보도),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3050168> (2007.3.6. 전자신문 보도 참조)

8. 피고가 수행하는 공인인증 사업 분야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이라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용도가 제한된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가입자에게는 이를 무료로 발급하지만, 은행들을 상대로 일정한 수수료를 기여금 형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입 역시 피고의 공인인증 사업분야의 매출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이미 2003.1. 에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경우 법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은행들을 상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무료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앞서 제시한 증 제16호).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위반**

9.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및 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위 고시(제2002-6호), IV.3.라. (2) 및 (3)은 다음과 같이 그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差別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不利益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強制하는 행위

10. 인증서는 원래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개발된 기술이고, 전세계적으로 인증기관들은 운영체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피고 스스로도 90년대 말까지는 MS IE 외의 웹 브라우저에서도 인증서를 발급한 적이 있고, 피고의 경쟁 사업자인 한국정보인증은 리눅스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거래상대방이 반드시 MS IE 웹 브라우저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까.

11. 피고는 또한, 가입자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동의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앞서 제시한 증 제13호).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민원은 금융거래도 아니며, 피고 스스로도 용도의 제한이 없는 범용 공인인증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빌미로 삼아 가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피고의 행위는 일종의 “끼워팔기”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추가적 보안 조치가 MS IE 웹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하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워 피고는 MS IE 에서만 작동이 가능한 여러 프로그램을 가입자가 설치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不利益이 되는 행위를 強制”하는 것입니다.

12.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업자”는 반드시 “동일한 거래 분야”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sup>14</sup>와 “다른 사업자”<sup>15</sup>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는 동일한 거래 분야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13.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MS IE 외의 웹 브라우저 사업자(모질라, 애플, 오페라 등)의 사업이 부당하게 방해받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

14.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시장 지배력 여부를 불문). 특히, 동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상세한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 1, 제5항, 가목은 “거래 강제”의 한 유형으로서 “끼워팔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15.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5호, 제26호), V.5.가(3)(마)에 의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위”는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시되어 있습니다.
16. 피고는 가입자가 자기와 거래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고가 지정한 물품(윈도우 운영체제 및 그에 포함된 MS IE)를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어떠한 기술적, 경제적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은 물론, 국내의 경쟁 공인인증 사업자로 윈도우는 물론 리눅스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도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피고는 또한 거래의 조건으로 가입자가 반

14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5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3조.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한 제2조 제7호는 “경쟁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시 피고의 회원사(社員)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피고 외의 공인인증기관은 이러한 거래강제(끼워팔기)를 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17.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V.5.가(2)(나) ② (위법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18.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에 대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지난 7년간 말살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결과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윈도우 시장 점유율, MS IE 시장 점유율이 유지되는 극심한 경쟁제한 효과가 계속되어 왔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19.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위반 행위(“불공정 행위”)가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위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후자가 우선 적용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바 없다면, 전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2007.11.26.

원 고 김 기 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